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 2. 16.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본 제정안은 2023.2.2. 황민철, 김수진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2.3.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의안번호 : 2829호).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 안 제2조)

나. 예비군 부대가 차량을 임차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경우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예비군법」 제14조의3
-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별 첨

라. 기타

1) 제정안 : 별 첨

2) 조례안예고 : 2023. 2. 3. ~ 2023. 2. 9.

5. 검토의견

가. 제출 취지

○ 본 제정안은 「예비군법」 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규칙 제5조에 따라 양천구 거주 예비군 동원 훈련 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의 지원을 정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나. 주요 검토 내용

○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시차량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의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 종합 의견

○ 「예비군법」 제14조의3제1항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비군을 육성·지원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는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예비군의 육성·지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별표1은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예비군 훈련 차량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제정안이라 보고 드립니다.

【관 계 법 령】

□「예비군법」

제14조의3(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②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군부대의 장이 예비군의 동원을 하는 때에는 경찰서장은 동원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예비군의 육성·지원)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운영 및 유지
2.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
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
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원된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작전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원하고, 직장예비군에 대한 급식은 해당 직장의 장이 지원한다.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

제5조(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

[별표 1]

예비군 육성·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

1~4. (생 략)

5.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가. 예비군 후생·복지장구 확보의 지원

나. 작전중인 예비군에 대한 위로·격려

다.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

라. 지역주민 신고체제 확립의 지원

마.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의 지원

바.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예비군관련 지역행사의 지원